

1.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0,160,615	19,504,818
일반회계		604,726,628	18,141,799
특별회계		45,433,987	1,363,020
기타특별회계		45,433,987	1,363,020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4,257,824	127,735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935,238	118,057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03,949	3,1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5,019	16,95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14,827	207,445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95,154	26,8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5,880	21,7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00,879	120,026
	수질개선특별회계	16,458,485	493,755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7,576,732	227,302

제 2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4,063,501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19,063,501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